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**스템 사 보 그 서**

의안 번호 2096 2017년 11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9월 7일, 이명희 의원 (찬성자 10명)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17년 11월 27일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명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

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,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(안 제2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○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물순환 시민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의 외부위원 위촉 시 '성별을 고려하여 구성'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관련법인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1)에서 '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'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22조)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<u>성별을 고려하여</u> 구성한다.	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

^{1) 「}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판 사무에 판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 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혜황

-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(이 하 '조례') 제21조²)에 따라 시장이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.
- 위원 구성³⁾은 내부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이고 위촉 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 공동위원장 으로 하고 있음.
- 2014.4.1일, 1기 총 39명(내부위원 1명, 외부위원 38명)이 구성되었고, 2016.4.1일부터 현재까지 2기 총 43명(내부위원 5명, 외부위원 38명)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음.

- 3) 제22조(구성)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1. 수리지질, 응용 지질, 수문, 토양보전관리, 환경, 빗물관리, 물의 재이용, 도시계획, 자연재해,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2. 빗물관리, 물재이용, 지하수,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 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²⁾ 제21조(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·전문가·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.

^{1.} 물순화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
^{2.}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혐의에 관한 사항

^{3.}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
^{4.} 빗물분담량 산출

^{5.}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

^{6.}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

^{7.}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

^{8.}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

^{9.} 지하수의 보전·관리·조사·개발·이용

^{10.}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

^{11.}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

^{12.}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, 안전총괄본부장, 도시재생본부장, 물순환 안전국장,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한다

■ 법정 성별 구성범위(특정 성별 6/10 초과금지) 반영 건

- 현행 조례는 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단순히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성별의 구성범위가 명확히 나타나 있 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.
- 따라서, 본 개정안은 현행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, 법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조례 시행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.
- 그러나 서울시는 위원회의 특성상 관련분야 여성 전문인력이 상대 적으로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 시마다 40%이상을 확보하기는 사 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.
- 실제로, 1기 위원회는 남성 58%, 여성 42%이었으나, 2기는 남성 60.5%, 여성 39.5%로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상황임.

[표 2]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원 성별 현황

구분 임기	위원회 구성 현황			
	총원	남성(비율)	여성(비율)	
17]	2014.4.1.~2016.3.30.	38	22명 (58%)	16명 (42%)
27]	2016.4.1.~2018.3.30.	38	23 (60.5%)	15 (39.5%)

○ 이에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 단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"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4)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"고 규정하고 있는데,

○ 본 개정안은 이 단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바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을 함께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[표 3] 수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22조)

개 정 안	수 정 안
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	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
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.	" 「양성평등기본 법」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참고로, 법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실무위원회가 지방위원회가 아닌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위원회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법정 성비 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간과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^{4) 「}양성평등기본법」제1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·운영되는 양성평등실무위 원회

- 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6. 토론요지 : 없 음
- 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- 8. 수정안의 요지:
 -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함.
- 9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석)
- 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096 제 안 일 자 : 2017년 11월 27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함.
 (안 제22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2조제2항 중 "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."를 "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	정	안	수 정 안
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	제22조(구성) ①	(현행과	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
같음)	같음)			같음)
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	2			2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	
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				
는 자로 하며, 외부위원				
위촉시에는 <u>성별을</u> 고려		· <u>특정</u>	성별이	「양성평등기
하여 구성한다.	위원 수	의 10분의	의 6을 초	본법」 제21조제2항 본
	과하지	않도록	하여 구	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
	성한다.			위촉직 위원 수의 10분
				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
				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
				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
				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
				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
				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
				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
				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
				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"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"를 "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	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2
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	
며,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<u>성별을 고려하여</u>	「양성평등기본법」
구성한다.	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
	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
	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
	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
	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
	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
	러하지 아니하다.